7. 大邱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1. 審査過程

○ 回附日字 : 1993年 6月 11日

○ 提 出 者 : 大邱直轄市長(地域經濟局長)

○ 上程日字 : 1993年 6月 16日

(第21回 大邱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委員會)

2. 提案說明의 要旨(地域經濟局長 曺琪鉉)

가. 提案理由

○ 地域 中小企業의 育成에 必要한 資金確保 및 基金設置에 따른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 新經濟 5個年 計劃의 實踐方案으로 推進하고 있는 中小企業 構造改善 事業을 적극 支援코자함.

나. 主要骨子

1) 中小企業運轉資金 融資(案 第6. 10. 12條)

○ 融資對象 業體 :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공단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融資條件

- 대출한도액 : 1억원 내외
- 융 자 기 간 : 1년(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가능)
- 융자금상환 : 전액 일시 상환

2) 中小企業 構造改善資金 融資(案 第13. 14條)

○ 融資對象業體

-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체
-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체
- 개발기술사업화 추진기업체

○ 融資條件

- 대출한도액 : 신청자금의 100%
- 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3) 附則規定

既存의 大邱直轄市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는 廢止

3. 檢討報告의 要旨(專門委員 尹桂東)

○ 案 제6조와 관련하여, 中小企業運轉資金 융자대상업체에 있어서는 대구시내 主事業所가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장도 대구시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규정함이 실질적인 지역업체 지원책이라 사료되며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중점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첨단제품 생산업체, 공장자동화 추진업체, 수입대체 상품 생산업체, 환경오염,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등을 추가토록 함이 타당하며,

○ 案 제7조 融資計劃의 公告와 관련하여 融資計劃의 公告時期는 "매년 도초에"로 규정되어 있으나 年中 자금의 범위내에서 追加融資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매년"으로 수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또 案제8조 제1항 및 별지1호 서식 融資申請書 添附書類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시 구비해야할 "中小企業 立證資料" "工場登錄證 寫本" 제출 案은, 민원행정 처리의 간소화에 따라 제출대상에서 삭제함이 타당함.

○ 案제10조 제1항 貸出限度額과 관련하여 "대출한도액은 1억원 내외"로 규정되어 있어 한도액의 상한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1억원 이내"로 규정함이 타당함.

○ 案제11조 追加融資와 관련하여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金融機關"이 市長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한다"는 내용은 재원 및 융자권자가 市長인 반큼 市長이 金融機關과 협의, 追加融資토록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答　　辯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성격?	○ 융자추천된 업체중 대상자 선정이 주임무이고 중소기업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
○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이 1억원 내외로 된것은 표기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	○ 1억원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
○ 융자대상업체중 주거지역내 사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이떤지?	○ 관계법령에 각종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융자제외등의 표기는 어려움

5. 討論事項 : 없음

6.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만장일치)

7. 修正案 主要骨子

○ 융자대상업종에 있어 제5호 다음에 "첨단제품생산업체", "공장자동화 추진업체", "수입대체 상품생산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등을 추가(案제6조)

○ 공고시기를 "매년도 초에"에서 "매년"으로 변경(案제7조)

○ 융자신청시 제출서류중 "중소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 사본"은 삭제(案제8조, 별지1호 서식)

○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한도액을 "1억원 내외"에서 "1억원 이내"로 변경(案제10조 1항)

○ 추가융자에 있어 "금융기관"은 삭제하고 "시장과"는 "시장은"으로 함.(案제11조)

8. 修正案 本文 및 根據法令 : 別添

以上으로 大邱直轄市 中小企業育成資金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修正案 本文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직할시 및 구청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②대구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④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대구직할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첨단제품생산업체, 공장자동화추진계획, 수입대체상품생산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7. 기타 시장이 지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이 매년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②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을 경유할 때에는 구청장은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융자)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은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 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헤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3장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

제13조(융자대상업체)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구조개선자금으로 대구직할시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2.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3.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4.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5. 자동화·기술개발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7.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제14조(융자조건등) 구조개선자금은 융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융자하되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융자금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조개선자금의 융자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효율적인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1982. 1. 25 조례 제1537호)는 이를 폐지한다.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기금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 설치)

○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항